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법적 근거 마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99호)

2021.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	3
※참고자료	8
1.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관련 환경부의 추진 현황	8

I. 제안경위

2021년 7월 20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77개 지역 732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 5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5(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¹⁾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사고대비물질²⁾의 취급자로 하여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한편(§23·39·40),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23의4), 화학사고 발생 시 발생신고, 현장 대응,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43·44),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행법 주요 규정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u>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u>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u>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u>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u>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u>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화학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관리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³⁾에 따른 일반적인 재난 대피장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

소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학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장소의 별도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면서 그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정 유형의 재난과 관련된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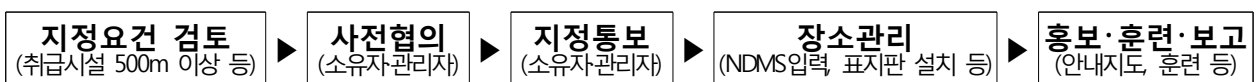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관련 환경부의 추진 현황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 권고('21.3)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시 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관리, 점검,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 지자체 배포(66개소 조례 제정)
- ※ 화관법 제7조의2(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 마련 및 배포('21.8)



- **(지정요건)** 취급시설 경계로부터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화학물질 확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옥외공간 제외)으로 학교 강당, 체육관 등 선정
- **(장소관리)** 대피장소명, 수용인원, 면적, 위치, 관리자, 연락처 등 현황 정보 현행화(국가재난관리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안내요원 지정
- **(홍보·훈련)** 지역주민의 대피장소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해 안내지도 제작 등 대피장소 홍보 및 대피장소를 활용한 대피훈련 실시
- **(표지판 설치)** KS 국가표준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색상, 재질 등을 선정

심 불	안내 표지 판	방 향표지 판